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25호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5-	497호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2
○ 공고 제2015-	502호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3
○ 공고 제2015-	5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 공고 제2015-	51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	17
○ 공고 제2015-	5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3지구 소로3-3~6호선) 사업 실시계획의 열람·공고	20
○ 공고 제2015-	524호	도로지정 공고	26
○ 의 회 사 무 국 공고 제2015-	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자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
○ 의 회 사 무 국 공고 제2015-	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45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21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55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22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56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2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57

고 시

○ 고시 제2015-	3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8
○ 고시 제2015-	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0
○ 고시 제2015-	4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1
○ 고시 제2015-	41호	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4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3.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년 3월 16일 ~ 2015년 3월 31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2. 당사자	성 명	이*길	주민등록번호	590419-*****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호 (만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제1항[지연신고] 규정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25만원 부과		
5.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조제1항, 동법 제8조제2항1조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5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폐업신고 지연] 규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를 체납하여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3.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년 3월 17일 ~ 2015년 3월 31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김 * 정	주민등록번호	650201-*****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번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폐업신고 지연] 규정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212,400원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5.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동법 제51조제3항4호,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2-나-5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5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고)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일부 내역을 변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3] 일부 내역을 변경
4. 관계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 허가)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세무2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351, FAX 453-23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별첨(아래)참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고) 수수료 삭제, 부속의료기관을 병원급,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수수료 신설 (안 별표1)
○ 정보공개 문서 수수료 기준 변경 (안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문서·대장 등(전자파일 포함)열람 -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 10장 초과시 5장마다 : 100원 - 도면·카드 등 (전자파일 포함)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 100원	- 문서·도면·사진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문서·대장·도면·카드 등)의 복제 - 1건(10장 기준) 1회 : 200원 -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사진필름의 전자파일 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단,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 음”

□ 참고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현행				개정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4.보건사회관계				4. 보건사회관계			
(1)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1)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2)의료기관(병원급)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 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2)의료기관(병원급) 개설 장소의 이전허가 <변경>	1건	40,000원	
(3)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3)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4)의료기관(의원급)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4)의료기관(의원급) 개설 장소의이전 신고 <변경>	1건	20,000원	
(5)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5)부속 의료기관(병원급) 개설허가[신설]	1건	100,000원	
(6)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구분명 변경>	1건	10,000원		(6)부속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이전허가 [신설]	1건	40,000원	
(7)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신설]	1건	40,000원		(7)부속의료기관(의원급) 개설 신고 <변경>	1건	10,000원	
(8)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신설]	1건	20,000원		(8)부속의료기관(의원급) 개설장소의 이전신고 <변경>	1건	20,000원	
(9)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신설]	1건	10,000원		(9)치과기공소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0)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신설]	1건	10,000원		(10)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11)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12)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별표3]

정 보 공 개 수 수 료

현행		개정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공개대상	열람·시청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문서·도 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 다 1,000원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 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u>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u>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 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필름· 테이프 등	○ <u>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u>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u>영화필름의 시청</u>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u>사진필름의 열람</u>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현행 공개방법 및 수수료		개정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공개대상	열람·시청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마이 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u>마이크로필름의 열람</u>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 마다 100원 ○ <u>슬라이드의 시청</u> －1컷마다 200원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현행 공개방법 및 수수료		개정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공개대상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매 초과마다 50원	문서·도면·사진 등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도면·카드 등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삭제조항)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현행		개정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공개대상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 슬라이드 등	○ <u>사본(종이출력물)</u>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u>마이크로필름의 복제</u>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u>슬라이드의 복제</u>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현행 공개방법 및 수수료		개정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공개대상	열람·시청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사진·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마이크로 필름	없음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현행		개정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공개대상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 제물
문서· 대장 등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 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 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 이출력물) 수수료의 1/2 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 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 5 " 50원 5 " × 7 " 100원 8 " × 10 "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초과시 0.5 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참고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 경우 :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 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51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래지구 소1-3호선,소1-4호선】 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내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도로개설공사
- 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109-6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소1-3호선 : A=543㎡, L=50.0m, B=10.0m
 - 소1-4호선 : A=34㎡, L=29.0m, B=9.5 ~ 10m
- 라. 사업기간 : 2015. 2. 27 부터 2016. 12. 31까지
-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보상내용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 가. 토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6번지 일원
-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5. 03. 20. ~ 2015. 04. 06(17일)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관리과 도시관리팀
(☎ 032 - 453 - 2992)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등 확인 누락여부
-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등

-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별도 개별통지
-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원칙(계좌입금)

다. 보상금액 산정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본인 청구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후 일시불 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보 상 절 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 ⇒ 공탁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아래서식 참조 구분작성)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2015.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대리인은 불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가.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계획입니다.

나.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다.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열람 및 이의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도시행정팀 (☎032-453-29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 류	
1	논현동	109-60	답	31	31	장*수	남구 송의동 ***-**				소로1-3호선
						황*덕	남구 송의동 *-***				
2	논현동	109-178	답	300	300	김*희	미국뉴저지 ***** 테네플라이 옛지우드 스트리트 **				소로1-3호선
						김*인	미국뉴저지 ***** 올드 태판 오코놀 라인 **				
3	논현동	109-236	대	42	42	권*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교골길27번길 ***-*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근저당권 이전	소로1-3호선
4	논현동	109-237	대	76	76	황*수	논현동 ***				소로1-3호선
5	논현동	109-238	대	12	12	황*수	논현동 ***				소로1-4호선
6	논현동	109-239	대	94	94	최*분	논현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압류	소로1-3호선
7	논현동	109-240	답	22	22	최*분	논현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압류	소로1-4호선
계				577	577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물건의 구조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 류	
1	논현동	109-237	주거용 (1F)	스레트	1동 (A=105㎡)	황*수	남동구 논현동 ***				건물 미등기
2	논현동	109-236	주거용 (1F)	스레트	1동 (A=113㎡)	권*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교골길27번길 ***-				건물 미등기
3	논현동	109-178	상 가 (1F)	조립식	1동 (A=64㎡)	김*희	미국뉴저지 ***** 테네플라이 옛지우드 스트리트 **				건물 미등기
						김*인	미국뉴저지 ***** 올드 태판 오코놀 라인 **				
계					3동 (A=282㎡)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5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3지구 소로3-3~6호선) 사업 실시계획의 열람 ·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3지구 소로3-3~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297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3.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63-6 ~ 268-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3지구 소로3-3~6호선)
 - 명 칭 : 도림3지구 소로3-3~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3,153㎡
 - 소로 3-3호선 : L=217.9m, B=6.0m
 - 소로 3-4호선 : L=98.0m, B=6.0m
 - 소로 3-5호선 : L=94.0m, B=6.0m
 - 소로 3-6호선 : L=62.0m, B=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지 조서

☒ 소로 3-3호선

번 호	동명	지 번	지 목	공 부 (㎡)	편입면적(㎡)		잔 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도림동	263-6	전	48.0	48.0		-		인천시 남*구			소 3 - 3 호선
2	도림동	262-7	답	291.0	291.0		-	인천시 남동구 수골로 ***(도림동)	윤 * 진 외1인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3	도림동	261-8	답	3.0	3.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대 ****사			소 3 - 3 호선
4	도림동	268-15	임	275.0	275.0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동 ****호	조*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주)안****행	소 3 - 3 호선
5	도림동	262-4	답	1.0	1.0		-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503번길 98, ***동 ****호	임*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6	도림동	262-2	답	1,086.0		22.0	1,064.0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503번길 98, ***동 ****호	임*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6	도림동	262-8	답	21.0		21.0	-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503번길 98, ***동 ****호	임*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7	도림동	268-14	임	5.0		5.0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동 ****호	조*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주)안****행	소 3 - 3 호선
8	도림동	267-9	전	150.0	150.0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58 팬더아 파트 *동 ***호	조*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9	도림동	267-2	전	279.0		32.0	247.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58 팬더아 파트 *동 ***호	조*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9	도림동	267-11	전	31.0		31.0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58 팬더아 파트 *동 ***호	조*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10	도림동	268-16	임	21.0	21.0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동 ****호	조*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주)안****행	소 3 - 3 호선
11	도림동	267-10	전	16.0	16.0		-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10 삼환 아파트 ***동 ****호	김*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12	도림동	267-7	전	986.0		30.0	956.0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10 삼환 아파트 ***동 ****호	김*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12	도림동	267-12	전	29.0		29.0	-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10 삼환 아파트 ***동 ****호	김*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남*****합	소 3 - 3 호선
13	도림동	268-12	전	49.0		14.0	35.0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33번길 23, ***동 ***호	조*국			소 3 - 3 호선
13	도림동	268-19	전	14.0		14.0	-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33번길 23, ***동 ***호	조*국			소 3 - 3 호선
14	도림동	268-2	전	82.0		13.0	69.0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33번길 23, ***동 ***호	조*국			소 3 - 3 호선
14	도림동	268-18	전	13.0		13.0	-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33번길 23, ***동 ***호	조*국			소 3 - 3 호선
15	도림동	268-13	전	172.0	172.0		-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33번길 23, ***동 ***호	조*국			소 3 - 3 호선
16	도림동	268-17	임	14.0	14.0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동 ****호	조*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주)안****행	소 3 - 3 호선

○ 소로3-4호선

번 호	동명	지번	지 목	공부 (㎡)	편입면적(㎡)		잔여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도림동	266-77	전	16.0		4.0	12.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1	도림동	266-105	전	3.0		3.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2	도림동	266-6	대	213.0		7.0	206.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2	도림동	266-99	대	6.0		6.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3	도림동	266-82	대	19.0	19.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4	도림동	266-78	전	885.0		90.0	795.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4	도림동	266-106	전	81.0		81.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4-1	도림동	266-107	전	7.0		7.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5	도림동	266-4	전	1,069.0		7.0	1,062.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5	도림동	266-96	전	7.0		7.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6	도림동	266-79	전	281.0	281.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4호선
7	도림동	266-91	전	224.0	224.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4호선
8	도림동	266-88	전	82.0	82.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4호선
9	도림동	266-37	전	962.0		185.0	777.0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4호선
9	도림동	266-104	전	183.0		183.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4호선
10	도림동	266-53	전	52.0	12.0	2.0	38.0		인천시남*구			소3-4호선
11	도림동	266-89	도	4.0	4.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3인			소3-4호선

○ 소로3-5호선

번호	동명	지번	지목	공부 (㎡)	편입면적(㎡)		잔여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도림동	272-1	전	156.0		14.0	142.0	인천시남구도림동****-	조*석			소3-5호선
1	도림동	272-83	전	14.0		14.0	-	인천시남구도림동****-	조*석			소3-5호선
2	도림동	272-82	전	80.0	80.0		-	인천시남구도림동****-	조*석			소3-5호선
3	도림동	272-80	전	6.0	6.0		-	인천시남구도림동****-	조*석			소3-5호선
4	도림동	272-41	전	5.0		2.0	3.0	인천시남구도림동****-	조*석			소3-5호선
4	도림동	272-84	전	2.0		2.0	-	인천시남구도림동****-	조*석			소3-5호선
5	도림동	272-81	전	3.0	3.0		-	인천시남구도림동****-	조*석			소3-5호선
6	도림동	271-17	전	138.0	138.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7	도림동	271-18	전	176.0		2.0	174.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7	도림동	271-21	전	18.0		18.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8	도림동	271-1	전	1,159.0		18.0	1,141.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8	도림동	271-19	전	58.0		58.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6호선
9	도림동	266-94	과	13.0	13.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안*화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주)하**행	소3-5호선
10	도림동	266-22	과	474.0		6.0	468.0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안*화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주)하**행	소3-5호선
10	도림동	266-102	과	6.0		6.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안*화	서울시중구을지로1가****-	(주)하**행	소3-5호선
11	도림동	266-92	과	147.0	147.0		-	인천시남동구소래역로94,****동****호(논현동)	조*숙	부천시오정구중동로399번길28-14,*-****	유*종	소3-5호선
12	도림동	266-10	과	902.0		8.0	894.0	인천시남동구소래역로94,****동****호(논현동)	조*숙	부천시오정구중동로399번길28-14,*-****	유*종	소3-5호선
12	도림동	266-100	과	8.0		8.0	-	인천시남동구소래역로94,****동****호(논현동)	조*숙	부천시오정구중동로399번길28-14,*-****	유*종	소3-5호선
13	도림동	266-81	전	68.0	68.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14	도림동	266-4	전	1,069.0		10.0	1,059.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14	도림동	266-98	전	8.0		8.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14	도림동	266-97	전	2.0		2.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15	도림동	266-87	전	104.0	104.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5호선
16	도림동	266-86	전	9.0		5.0	4.0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5호선
16	도림동	266-108	전	5.0		5.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5호선
17	도림동	266-19	전	702.0		16.0	686.0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5호선
17	도림동	266-101	전	16.0		16.0	-	인천시남동구도림동****-	장*선외2인			소3-5호선
18	도림동	266-80	전	1.0	1.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

○ 소로3-6호선

번 호	동명	지번	지목	공부 (㎡)	편입면적(㎡)		잔여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도림동	271-16	전	1,226.0		40.0	1,186.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6호선
1	도림동	271-20	전	40.0		40.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6호선
2	도림동	271-15	전	406.0	406.0		-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6호선
3	도림동	271-1	전	1,159.0		42.0	1,117.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6호선
3	도림동	271-1	전	1,159.0		-	1,159.0	인천시부평구십정동****-	최*례외1인			소3-5호선에 편입면적포함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524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5. 3.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5. 3. 20. ~ 2015. 4. 6.
4. 공고 내용

도로위치	지적 면적 (㎡)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
				성 명	
남촌동 406-24	1,005	4	4	한 * *	본인 동의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3. 13 .

발 의 자 : 이 오 상 의원(1인)

찬 성 자 : 임춘원 의원외 5인

□ 제 안 이 유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함.
- 또한, 상위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보정함은 물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 규모별로 정하고 지원제한년수를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규모별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및 내용 추가(안 제1조)
- 상위 법령과 상이한 내용 보정(안 제2조)
-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안전 사항 신설 (안 제3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한도 및 지원제한년수 조정(안 제4조,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대조표 : “별첨”

□ 참고자료

- 「주택법」 제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9조, 제50조, 제81조, 제87조
-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48조, 제64조, 제65조, 제118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9조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 제10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8항 및 43조의3”으로 하고 “관리업무와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업무와 활성화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하고, 제4호 중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가목내지 다목을 삭제한다.

제3조 중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으로 한다.

제4조 중 “오천만원”를 “별표3(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별표3를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관리주체”을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라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세대 주택”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로 하며, 제4항 중 “10년”를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한도

(제4조 관련)

(단위 : 세대, 천원)

세대수	지원금액	비고
100미만	10,000	
100~500미만	30,000	
500~1,000미만	50,000	
1,000~2,000미만	75,000	
2,000이상	10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u>관리업무와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u>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u>쾌적한 주거환경 조성</u>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u>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u>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u>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	제1조(목적) ----- --제43조제8항 및 43조의3의--- -----<u>관리업무와 활성화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u>----- ----- <u>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u>----- ----- 제2조(정의) ----- ----- --- 1.----- ----- ----- ----- 2. ----- ----- ----- 3.----- <u>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u>----- 4. -----<u>법 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한</u>----- ----- <u>가.(삭제)</u>

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

제3조(종합계획수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④ (생략)

⑤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1(지원금의 지원비율) 규정에 따르며, 각 공동주택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신 설>

나.(삭제)

다.(삭제)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④ (현행과 같음)

⑤-----별표3(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7조(지원신청) ① (생략) ② 제4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u>관리주체</u>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 의결서(<u>다세대주택</u>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사본 1부 2~4 (생략) ③ (생략) ④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별로 년 1회에 한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u>10년</u>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u>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u>----- ----- 1.----- ----- --<u>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u>----- ----- -- 2~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5년</u>----- ----- ---
---	---

비 용 추 계 서(제4조의2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주택법 제43조의3)

나. 안전관리 위탁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탁수수료에 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다. 안전관리비 지원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에 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안전관리비용 지원)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시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할 경우 우리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인천광역시의 예산 지원은 기대할 수 없음.

나. 추계결과

현재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84개소(아파트 75개소 연립주택 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이 재정적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1년에 42개소씩 2년을 주기로 점검 할 경우 매년 약 100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판단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총사업비 및 추가 재정소요 :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신설)	100	100	100	100	100	500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활성화 비용(중전)	200	200	200	200	200	1,000

다. 재원조달 방안

구비 :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이오상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신설)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활성화비(중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참고자료】

주 택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3. 생략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18. 생략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법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 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3의3.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④ 생략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삭제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 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안전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9조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구청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1. 제정이유**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 등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소득간 격차가 점차로 심화되어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선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2. 주요내용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생활임금의 결정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안 제5조)
- 생활임금의 적용시기(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7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47
----------	------

발의연월일 : 2015. 03. 16.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외 9명

☐ 제안이유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 등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소득간 격차가 점차로 심화되어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 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선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생활임금의 결정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안 제5조)
- 생활임금의 적용시기(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6조, 제8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② “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④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⑤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⑥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남동구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⑦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소속 근로자와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남동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남동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생활임금의 심의 및 의결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 ③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가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6조(적용시기) 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안 제3조(적용대상) 및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거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산정에 관하여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 함.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소속 근로자와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남동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③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생활임금 적용 범위 및 수준에 대하여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남동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생활임금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하며, 협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생활임금안 등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 한다.
- ③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가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범위는 남동구 소속 근로자 중에서 생활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대상 추계하였음
 - ※ 남동구 직속 산하기관 및 구 사무 민간위탁 사업자·기관 소속 근로자 산정은 제외하였으나,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시 추가 비용 요인 발생
 - 2015.01.01. 기준 남동구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수 총 196명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 고려 인원은 150명 임(46명은 연 10일 또는 60회 등 단기고용 근로자로 산정 제외 함).
 - 생활임금 지원대상 인원은 총 143명 임(150명 중 생활임금액 이상 급여자 7명

산정 제외 함).

※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 제외 함.

○ 비용추계 가정 및 방법은

- 생활임금의 경우 동 조례안에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며, 남동구 재정 여건과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산정 함.

○ 비용추계 방법은

- 남동구 생활임금액(안)은 전년도(2014년도) 근로자 연평균 월급여액(2,838,343원)의 50%인(OECD 권고) 월일정액 **1,419,100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급 **6,790원**)으로 정 함(자료 : 통계청 전국 5인 이상 상용직 연도별 4월 기준 평균임금 참조).

※ 다만 생활임금심의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의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남동구 생활임금액(안) 적용방법은 적용대상자 시급과 생활임금 시급 6,790원간 차액 일률적 지원 함.

※ 생활임금심의 기구에서 직종별 임금격차에 따른 임금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시급에 따라 구간별 차등 적용시 비용이 달리 발생 할 수 있음.

- 연도별 생활임금 증가분은 최근 3년(2013~201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6.8%**를 적용 함(최저임금인상률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의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 산정되어 산정하지 아니 함.

나.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1,966,9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비용	1,966,900	343,370	366,730	391,680	418,330	446,790
임금지원액	1,771,700	309,300	330,340	352,810	376,810	402,440
4대보험료 (사용자분)	195,00	34,070	36,390	38,870	41,520	44,350

○ 생활임금 지원 연간 추계액 산정 개요

- 2015년도 생활임금 지원 연간 추계액은 321,500천원(임금지원액 289,600천원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31,900천원)임.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는 인상률을 고려하여 임금지원액의 11%로 산정

** 2015년 기준 사업주 4대보험 부담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3.234%, 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기금 포함)료 0.98%, 산재보험(예, 지방자치단체 행정요율) 0.9% 임.

- 2016년부터 생활임금 지원 연간 추계액은 최근 3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6.8% 반영 함.
- 2015년도 생활임금 지원 연간 추계액 세부내역

구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수			생활임금 지원 연간 추계액			
	주40시간 미만	주40시간 이상	계	적용시급	임금지원액 (천원)	4대보험료 (천원)	계 (천원)
소 계	52명	98명	150명	-	289,600	31,900	321,500
시급 5,580 ~ 6,250	52명	91명	143명	6,790	289,600	31,900	321,500
시급 6,790 이상	-	7명	7명	-	-	-	-

* 근로자수는 기획예산실 2015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 현황' 참조

다. 재원조달 방안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표시)

4. 부대의견

-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제정 및 지급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노사민정협의회의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 따라 시행시기 변경,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수준(예, 위 비용추계의 일률적 적용이 아닌 구간별 차등 적용의 경우) 등 비용추계를 달리 산정할 수 있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343,370	366,730	391,680	418,330	446,790	1,966,9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지방세	343,370	366,730	391,680	418,330	446,790	1,966,9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21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3. 24.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5. 03. 12. ~ 2015. 03. 23. (12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2011-0199769	신토리아채 곱창.순대국	이*태	담방로48번길 13-11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2.10.	2015.03.24.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3. 23.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03.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22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3. 27.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5. 03. 17. ~ 2015. 03. 26. (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2013-0199110	칼또만또	장*진	호구포로 201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1.31.	2015.03.27.
2	일반 음식점	2013-0199113	달다롱	장*진	호구포로 201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1.31.	2015.03.27.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3. 26.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03.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2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공고기간 : 2015. 03. 17. ~ 2015. 03. 26. (10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3. 27.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식품제조 가공업소	231	(주)금옥식품	청*영	남동대로 341, A동 지하1층 (남촌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10.20.	2015.03.27.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3. 26.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처분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3

2015. 03.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3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남동구 수산동 322번지 일원(능골지구)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있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435	수산동 322	수산동 549-2	일반 도로	2006. 6.5	
변경	소로	2	1	8	국지	435	수산동 322	수산동 549-2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4	6	국지	348	소3-5 수산동 529-2	수산동 563	일반 도로	2006. 6.5	
변경	소로	3	4	6	국지	348	소3-5 수산동 529-2	수산동 563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5	6	국지	511	수산동 529-1	수산동 573	일반 도로	2006. 6.5	
변경	소로	3	5	6	국지	511	수산동 529-1	수산동 573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 변경 사항만 표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2-1호선	소2-1호선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당초(3,456㎡) 변경(3,460㎡) 증(4㎡)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저축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 및 토지이용 효율성 도모를 위해 도로선형 변경
소3-4호선	소3-4호선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당초(2,091㎡) 변경(2,089㎡) 감(2㎡)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저축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 및 토지이용 효율성 도모를 위해 도로선형 변경
소3-5호선	소3-5호선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당초(3,079㎡) 변경(3,077㎡) 감(2㎡)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저축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 및 토지이용 효율성 도모를 위해 도로선형 변경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4.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생활경제과(☎453-60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3.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의 결정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남동구 구월동 1171-3번지 일원	-	증) 1,066.6	1,066.6	-	

2)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신설 - 면적: 1,066.6m²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편의 및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4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3.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교통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02	중로 3-46	소로 3-73	일반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8호선	• 위치 : 간석동 산15-6 번지 일원 • 노선신설 L=102m, B=10m	•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확폭하여 도로 신설

■ 공간시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석촌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	53,577	증)114	53,691	인천광역시 시고시 제2013-9 8호 (2013.6.2 4.)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석촌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면적변경 A=53,577m ² → 53,691m ² 증)114m ²	·도로신설에 따른 공원 일부 면적 변경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41호

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3.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림구역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남동구 도림로 29번길 일원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일반사항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공동주택용지(A용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36	18,915.6	-	-	도림동 651-1	10,073.4	공동개발 (권장)
				도림동 651-2	8,842.2	
32	16,143.4	-	-	도림동 654-2	8,926.3	공동개발 (권장)
				(공개공지 일부포함)		
				도림동 654-1	7,217.1	

■ 주상복합용지(B용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10	2,434.9	1	763.1	-	-	
		3-1	41.8	-	-	
		4	380.3	-	-	
		5	183.4	-	-	
		6	299.2	-	-	
		8	403.3	-	-	
		9	363.8	-	-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12	1,241.0	-	-	도림동 658-11	240.5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8-12	236.1	
		3	290.2	-	-	
		4	305.9	-	-	
		5	168.3	-	-	
15	1,362.9	-	-	도림동 663-2	200.0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3-3	192.4	
		-	-	도림동 663-4	482.1	2필지 분할가능 1,114.3㎡ 중 D용도 632.2㎡ B용도 482.1㎡
		-	-	도림동 663-5	220.6	2필지분할가능 637.3㎡ 중 D용도 416.7㎡ B용도 220.6㎡
		-	-	도림동 663-6	267.8	2필지분할가능 620.3㎡ 중 D용도 352.5㎡ B용도 267.8㎡
21	1,319.6	1	360.6	-	-	
		2	167.8	-	-	
		3	149.2	-	-	
		5	157.4	-	-	
		-	-	도림동 664-3	141.0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4-2	108.9	
		8	234.7	-	-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25	1,261.0	1	288.5	-	-	
		2	308.5	-	-	
		3	240.5	-	-	
		4	195.0	-	-	
		5	228.5	-	-	
28	1,126.6	-	-	도림동 672-7	271.0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2-8	245.8	
		3	277.6	-	-	
		4	332.2	-	-	
31	691.0	1	198.1	-	-	
		2	225.3	-	-	
		-	-	도림동 677-3	117.0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7-4	150.6	

■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C용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11	1,916.5	-	-	도림동 659-2	339.2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9-3	517.7	
		-	-	도림동 659-4	448.0	
		-	-	도림동 659-5	348.3	
		-	-	도림동 659-10 (환지도로)	263.3	
18	3,949.4	-	-	도림동 667-3	417.9	
		-	-	도림동 667-4	430.2	
		-	-	도림동 667-17	358.1	
		-	-	도림동 667-15	348.0	
		-	-	도림동 667-13	317.5	
		-	-	도림동 667-11	442.4	
		-	-	도림동 667-9	460.3	
		-	-	도림동 668-2	229.9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	도림동 668-3	211.6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700	416.6	
		-	-	도림동 667-16 (환지도로)	60.8	
		-	-	도림동 667-14 (환지도로)	77.3	
		-	-	도림동 667-12 (환지도로)	76.4	
		-	-	도림동 667-10 (환지도로)	102.4	
22	4,050.7	-	-	도림동 669-1	192.7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9-3	266.1	
		-	-	도림동 669-5	234.9	
		-	-	도림동 669-7	343.3	
		-	-	도림동 669-9	342.4	
		-	-	도림동 669-10	493.4	
		-	-	도림동 669-12	490.7	
		-	-	도림동 669-13	482.5	
		-	-	도림동 669-16	515.4	
		-	-	도림동 669-8	401.0	
		-	-	도림동 669-2 (환지도로)	50.7	
		-	-	도림동 669-4 (환지도로)	80.0	
		-	-	도림동 669-6 (환지도로)	72.3	
		-	-	도림동 669-11 (환지도로)	85.3	
23	473.9	-	-	도림동 670-8	167.1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0-7	276.1	
		-	-	도림동 670-11	30.7	

■ 단독주택용지(D용도)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1	1,177.2	1	262.3	-	-		1	1,177.2	1	262.3	-	-	
		2	457.2	-	-				2	457.2	-	-	
		3	457.7	-	-				3	457.7	-	-	
2	1,007.6	1	505.7	-	-		2	1,007.6	1	505.7	-	-	
		2	501.9	-	-				2	501.9	-	-	
3	1,427.2	1	517.1	-	-		3	1,427.2	1	517.1	-	-	
		2	549.9	-	-				2	549.9	-	-	
		7	180.1	-	-				7	180.1	-	-	
		8	180.1	-	-				8	180.1	-	-	
4	903.4	1	221.5	-	-		4	903.4	1	221.5	-	-	
		2	221.2	-	-				2	221.2	-	-	
		3	230.7	-	-				3	230.7	-	-	
		4	230.0	-	-				4	230.0	-	-	
5	2,010.6	1	372.2	-	-		5	2,010.6	1	372.2	-	-	
		-	-	도림동 652-3	143.7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2-3	143.7	공동개발 (권장)
		-	-	-	-				-	-			
		-	-	도림동 652-10	162.2				-	-	도림동 652-10	162.2	
		5	474.6	-	-				5	474.6	-	-	
		-	-	-	-				-	-			
		7	198.3	-	-				7	198.3	-	-	
		8	162.7	-	-				8	162.7	-	-	
		9	212.2	-	-				9	212.2	-	-	
		10	284.7	-	-				10	284.7	-	-	
		-	-	-	-				-	-			
6	3,124.9	-	-	도림동 653-1	270.8	공동개발 (권장)	6	3,124.9	-	-	도림동 653-1	270.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3-2	143.3				-	-	도림동 653-2	143.3	
		3	442.7	-	-				3	442.7	-	-	
		4	347.2	-	-				4	347.2	-	-	
		5	330.4	-	-				5	330.4	-	-	
		6	270.0	-	-				6	270.0	-	-	
		7	275.7	-	-				7	275.7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8	200.2	-	-				8	200.2	-	-					
		9	344.4	-	-				9	344.4	-	-					
		-	-	-	-				-	-	-	-					
		-	-	-	-				12	253.0	-	-					
		12	253.0	-	-				13	247.2	-	-					
		13	247.2	-	-				-	-	-	-					
		-	-	-	-												
7	493.6	-	-	도림동 655-5	236.8	공동개발 (권장)	7	493.6	-	-	도림동 655-5	236.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5-4	256.8				-	-	도림동 655-4	256.8					
8	1,033.4	-	-	도림동 656-1	232.4	공동개발 (권장)	8	1,033.4	-	-	도림동 656-1	232.4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6-2	219.3				-	-	도림동 656-2	219.3					
		3	315.1	-	-				3	315.1	-	-					
		4	266.6	-	-				4	266.6	-	-					
9	2,381.4	-	-	도림동 657-1	95.0	공동개발 (권장)	9	2,381.4	-	-	도림동 657-1	95.0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15	183.9				-	-	도림동 657-15	183.9					
		2	123.8	-	-				2	123.8	-	-					
		4	130.5	-	-				4	130.5	-	-					
		6	141.8	-	-				6	141.8	-	-					
		-	-	도림동 657-13	148.1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13	148.1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14	156.5				-	-	도림동 657-14	156.5					
		-	-	도림동 657-5	125.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5	125.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6	157.3				-	-	도림동 657-6	157.3					
		-	-	도림동 657-12	205.9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12	205.9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11	206.8				-	-	도림동 657-11	206.8					
		-	-	도림동 657-7	133.2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7	133.2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57-8	124.0				-	-	도림동 657-8	124.0					
		-	-	도림동 657-9	125.1				-	-	도림동 657-9	125.1					
14	323.7	-	-		14	323.7	-	-									
11	1,257.2	2	280.9	-	-	11	1,257.2	2	280.9	-	-	11	1,257.2	2	280.9	-	-
		7	245.6	-	-			7	245.6	-	-						
		9	279.7	-	-			9	279.7	-	-						
		10	292.2	-	-			10	292.2	-	-						
		11	158.8	-	-			11	158.8	-	-						
13	3,367.9	1	214.2	-	-	13	3,367.9	1	214.2	-	-	13	3,367.9	1	214.2	-	-
		2	330.5	-	-			2	330.5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3	412.2	-	-				3	412.2	-	-	
		5	125.7	-	-				5	125.7	-	-	
		-	-	-	-				-	-	-	-	
		7	170.1	-	-				7	170.1	-	-	
		8	173.4	-	-				8	173.4	-	-	
		9	141.1	-	-				9	141.1	-	-	
		-	-	도림동 661-16	206.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1-16	206.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1-17	211.6				-	-	도림동 661-17	211.6	
		11	185.4	-	-				11	185.4	-	-	
		13	237.8	-	-				13	237.8	-	-	
		14	162.6	-	-				14	162.6	-	-	
		-	-	도림동 661-5	146.4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1-5	146.4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1-4	164.1				-	-	도림동 661-4	164.1	
		16	148.5	-	-				16	148.5	-	-	
		17	165.4	-	-				17	165.4	-	-	
		18	172.1	-	-				18	172.1	-	-	
14	2,369.8	1	180.1	-	-		14	2,369.8	1	180.1	-	-	
		2	159.0	-	-				2	159.0	-	-	
		3	268.5	-	-				3	268.5	-	-	
		4	208.2	-	-				4	208.2	-	-	
		5	240.0	-	-				5	240.0	-	-	
		6	183.4	-	-				6	183.4	-	-	
		7	298.1	-	-				7	298.1	-	-	
		8	242.0	-	-				8	242.0	-	-	
		9	198.6	-	-				9	198.6	-	-	
		10	187.7	-	-				10	187.7	-	-	
		12	204.2	-	-				12	204.2	-	-	
		15	2,860.9	1	169.3	-			-		15	2,860.9	1
2	261.8			-	-		2	261.8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3	575.8	-	-			3	575.8	-	-	-	
		5	219.4	-	-			5	219.4	-	-	-	
		6	233.2	-	-			6	233.2	-	-	-	
		-	-	도림동 663-4	632.2			-	-	도림동 663-4	632.2	2필지분할 가능 1,114.3㎡ 중 D용도 632.2㎡ B용도 482.1㎡	
		-	-	도림동 663-5	416.7			-	-	도림동 663-5	416.7	2필지분할 가능 637.3㎡ 중 D용도 416.7㎡ B용도 220.6㎡	
		-	-	도림동 663-6	352.5			-	-	도림동 663-6	352.5	2필지분할 가능 620.3㎡ 중 D용도 352.5㎡ B용도 267.8㎡	
17	1,792.0	1	605.1	-	-	17	1,792.0	1	605.1	-	-	-	획지계획 변경
		2	164.6	-	-			2	324.7	-	-	-	
		4	160.1	-	-			6	418.6	-	-	-	
		6	418.6	-	-			7	290.3	-	-	-	
		7	290.3	-	-			9	153.3	-	-	-	
		9	153.3	-	-								
18	1,712.1	1	224.8	-	-	18	1,712.1	1	224.8	-	-	-	
		2	136.9	-	-			2	136.9	-	-	-	
		5	383.8	-	-			5	383.8	-	-	-	
		-	-	-	-			-	-	-	-	-	
		12	418.1	-	-			12	418.1	-	-	-	
		13	320.2	-	-			13	320.2	-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14	228.3	-	-			14	228.3	-	-		
19	2,216.3	-	-	도림동 666-8	479.9	2필지분할 가능	19	2,216.3	-	-	도림동 666-8	479.9	2필지분할 가능
		2	169.9	-	-				2	169.9	-	-	
		3	158.8	-	-				3	158.8	-	-	
		4	130.3	-	-				4	130.3	-	-	
		5	174.8	-	-				5	174.8	-	-	
		6	176.7	-	-				6	176.7	-	-	
		7	147.8	-	-				7	147.8	-	-	
		8	169.6	-	-				8	169.6	-	-	
		-	-	도림동 666-3	179.7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6-3	179.7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6-2	143.1				-	-	도림동 666-2	143.1	
		10	285.7	-	-				10	285.7	-	-	
20	2,432.1	1	353.6	-	-		20	2,432.1	1	353.6	-	-	
		2	402.6	-	-				2	402.6	-	-	
		5	165.0	-	-				5	165.0	-	-	
		6-1	384.1	-	-				6-1	384.1	-	-	
		6-2	144.6	-	-				6-2	144.6	-	-	
		7	145.9	-	-				7	145.9	-	-	
		8	163.2	-	-				8	163.2	-	-	
		9	259.0	-	-				9	259.0	-	-	
		-	-	도림동 665-1	188.3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5-1	188.3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5-2	225.8				-	-	도림동 665-2	225.8	
22	1,690.7	10	318.2	-	-		22	1,690.7	10	318.2	-	-	
		11	394.1	-	-				11	394.1	-	-	
		-	-	도림동 669-18	219.2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9-18	219.2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69-19	166.4				-	-	도림동 669-19	166.4	
		-	-	도림동 669-20	189.3				-	-	도림동 669-20	189.3	
		-	-	도림동 669-21	153.1				-	-	도림동 669-21	153.1	
		23	250.4	-	-				23	250.4	-	-	
23	1,651.8	-	-	도림동 670-1	516.5	2필지분할 가능	23	1,651.8	-	-	도림동 670-1	516.5	2필지분할 가능
		2	211.1	-	-				2	211.1	-	-	
		3	205.5	-	-				3	205.5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4	176.7	-	-			4	176.7	-	-			
		5	190.5	-	-			5	190.5	-	-			
		9	205.4	-	-			9	205.4	-	-			
		10	146.1	-	-			10	146.1	-	-			
24	2,371.6	1	97.4	-	-	24	2,371.6	1	97.4	-	-			
		2	229.2	-	-			2	229.2	-	-			
		3	164.2	-	-			3	164.2	-	-			
		-	-	도림동 671-3	188.9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1-3		188.9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1-4	187.6				-	-	도림동 671-4		187.6	
		5	201.3	-	-			5	201.3	-	-			
		7	166.7	-	-			7	166.7	-	-			
		-	-	도림동 671-10	237.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1-10		237.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1-9	258.9				-	-	도림동 671-9		258.9	
		10	209.0	-	-			10	209.0	-	-			
		9	159.8	-	-			9	159.8	-	-			
		-	-	도림동 671-7	127.6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1-7		127.6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1-8	143.2				-	-	도림동 671-8		143.2	
26	612.0	1	184.6	-	-	26	612.0	1	184.6	-	-			
		2	149.8	-	-			2	149.8	-	-			
		3	160.7	-	-			3	160.7	-	-			
		4	116.9	-	-			4	116.9	-	-			
27	2,266.9	1	219.8	-	-	27	2,266.9	1	219.8	-	-			
		-	-	도림동 673-2	218.0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3-2		218.0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3-3	228.8				-	-	도림동 673-3		228.8	
		3	227.1	-	-			3	227.1	-	-			
		5	217.4	-	-			5	217.4	-	-			
		6	223.0	-	-			6	223.0	-	-			
		7	217.4	-	-			7	217.4	-	-			
		-	-	도림동 673-5	228.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3-5		228.8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3-6	281.0				-	-	도림동 673-6		281.0	
		9	205.6	-	-			9	205.6	-	-			
29	1,335.7	1	229.4	-	-	29	1,335.7	1	229.4	-	-			
		2	130.1	-	-			2	130.1	-	-			
		3	200.6	-	-			3	200.6	-	-			

기정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4	235.4	-	-				4	407.2	-	-	획지 계획 변경
		5	254.8	-	-				5	368.4	-	-	
		6	285.4	-	-								
30	1,848.0	-	-	도림동 676-1	214.6	공동개발 (권장)	30	1,848.0	-	-	도림동 676-1	214.6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6-8	259.8				-	-	도림동 676-8	259.8	
		-	-	도림동 676-9	210.2				-	-	도림동 676-9	210.2	
		-	-	도림동 676-2	294.3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6-2	294.3	공동개발 (권장)
		-	-	도림동 676-3	322.7				-	-	도림동 676-3	322.7	
		7	266.8	-	-				7	266.8	-	-	
		6	279.6	-	-	6			279.6	-	-		

■ 종교용지(F용도)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7	1,428.4	-	-	도림동 655-1	306.9	공동개발 (권장)
				도림동 655-2	330.2	
				도림동 655-6	427.6	
				도림동 655-3	363.7	
22	880.6	-	-	도림동 699-17	880.6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A용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A	32BL (654-1, 654-2) 36BL (651-1, 651-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의 불허용도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654-1, 654-2 220%이하 (단, 공동개발시 230%이하) · 651-1, 651-2 230% 이하 (단, 공동개발시 250%이하)
		높이		· 19층 이하
		배치		· 【별표2】의 A
		형태		· 【별표3】의 A
		색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지정

■ 주상복합용지(B용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B	10BL (658-2, 658-3, 658-5, 658-6, 658-7, 658-8, 658-9) 12BL (658-11, 658-12, 658-13, 658-14, 658-15) 15BL (663-2, 663-3, 663-4, 663-5, 663-6) 21BL (664-1, 664-2, 664-3, 664-4, 664-5, 664-6, 664-7) 25BL (672-1, 672-2, 672-3, 672-4, 672-5) 28BL (672-7, 672-8, 672-9, 672-10) 31BL (677-1, 677-2, 677-3, 677-4)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B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B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별표2】의 B
		형태		· 【별표3】의 B
		색채		· 【별표4】의 B
		건축한계선		· 25m 도로변 : 2m · 12m 도로변 : 1m

다세대주택용지(C용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C	11BL (659-2, 659-3, 659-4, 659-5, 659-10) 18BL (667-3, 667-4, 667-9, 667-10, 667-11, 667-12, 667-13, 667-14, 667-15, 667-16, 667-17, 668-2, 700) 22BL (669-2, 669-3, 669-4, 669-5, 669-6, 669-7, 669-8, 669-9, 669-10, 669-11, 669-12, 669-13, 669-16) 23BL (670-8, 670-7, 670-11)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별표2】의 C
		형태		· 【별표3】의 C
		색채		· 【별표4】의 C
		건축한계선		· 지정
C	18BL (668-3) 22BL (669-1)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의 허용용도, B의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C의 불허용도, B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별표2】의 C
		형태		· 【별표3】의 C
		색채		· 【별표4】의 C
		건축한계선		· 지정

■ 단독주택용지(D용도)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D	24BL (671-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의 허용용도, B의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D의 불허용도, B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별표2】의 D
		형태		• 【별표3】의 D
		색채		• 【별표4】의 D
		건축한계선		—
D	1BL (649-1, 649-2, 649-6) 2BL (649-4, 649-5) 3BL (650-1, 650-2, 650-3, 650-9) 4BL (650-5, 650-6, 650-7, 650-8) 5BL (652-2, 652-3, 652-10, 652-4, 652-5, 652-6, 652-7, 652-8) 6BL (653-1, 653-2, 653-3, 653-4, 653-5, 653-6, 653-7, 653-8, 653-9, 653-12, 653-14) 7BL (655-4, 655-5) 8BL (656-1, 656-2, 656-4, 656-5) 9BL (657-1, 657-2, 657-3, 654-4, 657-5, 657-6, 657-7, 657-8, 657-9, 657-10, 657-11, 657-1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별표2】의 D
		형태		• 【별표3】의 D
		색채		• 【별표4】의 D
		건축한계선		• 12m도로변 : 1m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657-13, 657-14, 657-15) 11BL (659-1, 959-6, 659-9, 659-8, 659-7) 13BL (661-12, 661-13, 661-11, 661-10, 661-9, 661-15, 661-8, 661-16, 661-7, 661-17, 661-18, 661-6, 661-5, 661-1, 661-2, 661-3, 661-4) 14BL (662-7, 662-8, 662-9, 662-10, 662-11, 662-1, 662-2, 662-3, 662-4, 662-5, 662-6) 15BL (663-7, 663-8, 663-9, 663-11, 663-1, 663-4, 663-5, 663-6) 17BL (660-6, 660-1, 660-2, 660-3, 660-4, 660-5 18BL (667-1, 667-2, 667-5, 667-7, 667-8, 668-1) 19BL (666-8, 666-7, 666-9, 666-6, 666-5, 666-10, 666-4, 666-11, 666-3, 666-12, 666-2) 20BL (665-7, 665-6, 665-5, 665-4, 665-8, 665-9, 665-10, 665-3, 665-1, 665-2) 22BL (669-14, 669-15, 669-18, 669-19, 669-20, 669-21, 669-22) 23BL (670-1, 670-2, 670-3, 670-10, 670-9, 670-5, 670-6) 24BL (671-1, 671-2, 671-13, 671-3, 671-1, 671-4, 671-11, 671-5, 671-6,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671-7, 671-8, 671-9, 671-10) 26BL (674-2, 674-3, 674-4, 674-5) 27BL (673-1, 673-2, 673-3, 673-4, 673-5, 673-6, 673-7, 673-8, 673-9, 673-10) 29BL (675-1, 675-2, 675-3, 675-4, 675-5, 675-6) 30BL (676-1, 676-2, 676-3, 676-4, 676-6, 676-8, 676-9)		

■ 변경(획지분할·합병에 의한 위치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D	24BL (671-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의 허용용도, B의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D의 불허용도, B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별표2】의 D
		형태		• 【별표3】의 D
		색채		• 【별표4】의 D
		건축한계선		—
D	1BL (649-1, 649-2, 649-6) 2BL (649-4, 649-5) 3BL (650-1, 650-2, 650-3, 650-9) 4BL (650-5, 650-6, 650-7,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650-8)		
	5BL (652-2, 652-3, 652-10, 652-4, 652-5, 652-6, 652-7, 652-8)	용적률	• 200% 이하
	6BL (653-1, 653-2, 653-3, 653-4, 653-5, 653-6, 653-7, 653-8, 653-9, 653-12, 653-14)	높이	• 4층 이하
	7BL (655-4, 655-5)	배치	• 【별표2】 의 D
	8BL (656-1, 656-2, 656-4, 656-5)	형태	• 【별표3】 의 D
	9BL (657-1, 657-2, 657-3, 654-4, 657-5, 657-6, 657-7, 657-8, 657-9, 657-10, 657-11, 657-12, 657-13, 657-14, 657-15)	색채	• 【별표4】 의 D
	11BL (659-1, 959-6, 659-9, 659-8, 659-7)		
	13BL (661-12, 661-13, 661-11, 661-10, 661-9, 661-15, 661-8, 661-16, 661-7, 661-17, 661-18, 661-6, 661-5, 661-1, 661-2, 661-3, 661-4)		
	14BL (662-7, 662-8, 662-9, 662-10, 662-11, 662-1, 662-2, 662-3, 662-4, 662-5, 662-6)	건축한계선	• 12m도로변 : 1m
	15BL (663-7, 663-8, 663-9, 663-11, 663-1, 663-4, 663-5, 663-6)		
	17BL (660-6, 660-1, 660-3, 660-4, 660-5)		
	18BL (667-1, 667-2, 667-5, 667-7, 667-8, 668-1)		
	19BL (666-8, 666-7, 666-9, 666-6, 666-5, 666-10, 666-4, 666-11, 666-3,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666-12, 666-2)		
	20BL (665-7, 665-6, 665-5, 665-4, 665-8, 665-9, 665-10, 665-3, 665-1, 665-2)		
	22BL (669-14, 669-15, 669-18, 669-19, 669-20, 669-21, 669-22)		
	23BL (670-1, 670-2, 670-3, 670-10, 670-9, 670-5, 670-6)		
	24BL (671-1, 671-2, 671-13, 671-3, 671-1, 671-4, 671-11, 671-5, 671-6, 671-7, 671-8, 671-9, 671-10)		
	26BL (674-2, 674-3, 674-4, 674-5)		
	27BL (673-1, 673-2, 673-3, 673-4, 673-5, 673-6, 673-7, 673-8, 673-9, 673-10)		
	29BL (675-1, 675-2, 675-5, 675-6, 675-9)		
	30BL (676-1, 676-2, 676-3, 676-4, 676-6, 676-8, 676-9)		

■ 종교용지(F용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필지)	구분		계획내용
F	7BL (655-1, 655-2, 655-3, 655-6) 22BL (669-17)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F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F의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15m 이하
		배치		• 【별표2】의 F
		형태		• 【별표3】의 F
		색채		• 【별표4】의 F
		건축한계선		• 12m 도로변 : 1m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계획내용	
A	공공조경	• 중로이상에 접한 공동주택용지면에 폭 5m의 내부조경을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 단, 공동주택 진출입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부분 제외 • 공개공지를 지정하여 주변과 조화 있는 단지 조성 유도(면적 : 2,290㎡)
	대지내 조 경	•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 구화인 개나리의 식재를 권장 •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호 부터 제7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계획내용	비고
• 공동개발 계획중 지정과 권장간의 상호 변경에 관한 사항(공동개발 폐지 제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대지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차량출입구의 변경(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및 Bus-bay, 가감속차로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별표참조)

-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 변경없음
- 【별표3】 건축물 형태 계획 : 변경없음
- 【별표4】 건축물 색채 계획 : 변경없음
- 【별표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별표8】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 기정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A	- 주택법에 의한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부대시설,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단, 기존입지만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단, 기존 다세대주택 제외)	
C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부대시설 [단, 단지내 기존 존치 상가건물(18BL 668-3) 및 유치원건물(22BL 669-1)은 B용도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단, 기존 다세대주택 제외)	
D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함 : 단, 변전소, 정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건축자재 관련 시설 제외) - 단, 기존의 존치 상가건물(24BL 671-2)은 B용도 적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단, 다음 항목의 시설은 1층에 한하여 허용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다. 서점 바. 금융업소·사무소·출판사·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및 소개업소등 바닥면적 500㎡ 미만 사. 세탁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표 참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F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 1) 대지분할 및 필지합병의 경우 공동주차 통로는 차량출입금지구간을 피하여 적정한 위치에 선정 가능
- 2) 단, 1개의 필지·획지가 2개의 용도에 걸쳐있는 경우 허용용도는 상위용도(B용도)적용
- 3) 종교용지(F용도)에 대하여는 공동개발 허용
- 4) 36블럭과 37블럭 공동개발을 전제로 36블럭에 한하여 용적률을 230%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조정
- 5)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명칭은 개정된 법령에 따름

■ 변경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A	- 주택법에 의한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부대시설,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단, 기존입지만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단, 기존 다세대주택 제외)	
C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부대시설 [단, 단지내 기존 준치 상가건물(18BL 668-3) 및 유치원건물(22BL 669-1)은 B용도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단, 기존 다세대주택 제외)	
D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함 :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2층까지 허용) 단, 변전소, 정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건축자재 관련 시설 제외하며, 기존의 준치 상가건물(24BL 671-2)은 B용도 적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단, 다음 항목의 시설은 1층에 한하여 허용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다. 서점 라. 금융업소·사무소·출판사·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및 소개업소 등 바닥면적 500㎡ 미만 마. 세탁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표 참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F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 1) 대지분할 및 필지합병의 경우 공동주차 통로는 차량출입금지구간을 피하여 적정한 위치에 선정 가능
 2) 단, 1개의 필지·획지가 2개의 용도에 걸쳐있는 경우 허용용도는 상위용도(B용도)적용
 3) 종교용지(F용도)에 대하여는 공동개발 허용
 4) 36블럭과 37블럭 공동개발을 전제로 36블럭에 한하여 용적률을 230%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조정
 5)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명칭은 개정된 법령에 따름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 변경없음

용도	도면 번호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A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해 단지내 층수 변화를 두어 경관 및 식별성 제고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방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주상복합용지	B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중로(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u>필지·획지</u>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3-21호선변에 접한 <u>필지·획지</u>는 근린생활시설용도에 적합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2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12m 도로에 접한 <u>필지·획지</u>는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단독 및 다세대주택, 종교용지	C D F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적용(단, 기존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중로(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u>필지·획지</u>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12m 도로에 접한 <u>필지·획지</u>는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필지·획지</u>가 2켜로 구성된 가구의 <u>필지·획지</u> 경계부에는 높이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을 활용한 녹지대 조성을 유도 12m 이상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가각에 접한 대지내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별표3】 건축물 형태 계획 : 변경없음

용도	도면 번호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A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 주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주상복합용지	B	•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단독 및 다세대주택, 종교용지	C D F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옥상부분의 옥외광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사용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함

【별표4】 건축물 색채 계획 : 변경없음

용도	도면 번호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A	• 구역의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베이지, 연한연두, 연한노랑, 연한하늘 등의 부담 없고 친근한 보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주상복합용지	B	• 주활동축으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강조색은 가능)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종교용지	C D F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색채는 파랑,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을 위주로 권장

※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을 사용토록 권장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도면번호	계획내용	
A	공공조경	- 중로이상에 접한 공동주택용지변에 폭5m의 내부조경을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 단, 공동주택 진출입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부분 제외 - 공개공지를 지정하여 주변과 조화 있는 단지조성 유도(면적 : 2,290㎡)
	대지내 조경	-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 또는 구화인 개나리 식재를 권장 -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B C D F	전면공지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도로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 조경	- 건축면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기준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 - 단,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 구화인 개나리 식재를 권장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용도	도면 번호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A	차량동선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 교차로 측단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시설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 1대/85㎡, 85㎡초과 : 1대/70㎡)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주상복합용지	B	차량동선	대로3-21호선변 근린생활시설 전면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단,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용도와 이면도로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필지는 제외)
		주차시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함
단독 및 다세대주택, 종교용지	C D F	차량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필지·획지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통로의 설치를 유도하며 필지·획지 1개소당 최소 3m이상 확보(단, 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함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도면표시	계획내용	
	보행자 전용도로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이 장애인 램프 설치를 고려하여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

【별표8】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가로시설물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규모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시각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가로 장치물 설계
식재		•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남동구의 구목인 벚나무 등의 식재 유도 •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이상 띄어서 식재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장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도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블록 사용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연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시설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결정하여 설치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타사항	기정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CIP 기준 등)
	변경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u>인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u>, <u>색채디자인 가이드 라인</u> 등 <u>인천시 도시디자인</u> 기준 등)

구분		계획내용
옥외 광고물 계획	표시(설치) 방향	• 건축한계선 밖으로 돌출금지 및 이동간판 사용금지 • 옥상간판 부착금지, 돌출간판 부착금지 • 가로형 간판은 건물정면 2층 이하에 설치하되 1개소 업소에 1개의 간판만 허용 (곡각 지점에는 2개 허용) • 간판 재질 중 후렉스의 사용을 제한함(단, 로고 및 픽토그램에 한하여 허용) •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 건물 내 같은 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단, 입체형, 조각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로 함 (다만, 층간 벽면 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80cm이하로 함) • 창문이용광고물 및 세로형 간판부착금지 (다만,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건물정면의 주 출입구 기둥 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 개별지주이용 광고물 설치를 금하고, 1개 건물당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지주이용광고물 허용(종합사인보드) • 현수막, 벽보부착은 일체 금지 (다만, 지정 벽보관 게시대 설치만 허용) • 주상복합용지에 한해서만 내온 및 전광류 사용허용 • 선전탑 아취 광고물은 사안에 따라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 공연간판은 공연 등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되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건축물 정면에 1개소만 추가로 허용 • 공공시설 이용광고는 허용 •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방향에 접하는 쪽으로 광고물 표시금지
	색채	• 광고물의 색채 중 적색류와 흑색류의 표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
	치수	•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수량	• 업소당 1개 이하로 설치 (곡각지점은 2개소 허용)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4.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